

BENJAMIN KOO & CO. CPAs
A Professional Corporation
3435 WILSHIRE BOULEVA
RDSUITE 162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EPHONE (213)388-5555
FACSIMILE (888) 783-0375

2015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위한 업데이트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개인

• **오바마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인상**

오바마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이 가족 구성원 당 \$95 에서 \$325 혹은 AGI 금액의 2% 중 큰 금액으로 인상되었습니다. California 를 통해 건강 보험을 들었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Covered California 에서 가입자에게 2016 년 1 월 31 일까지 발행하는 1095-A 양식이 소득보고에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095-B 또는 1095-C 양식을 직장에서 발급 받으셔서 세금보고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 **해외 금융자산 신고 해당자 및 신고 대상 재산**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납세자로 정의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해외 금융자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미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신고 자산에는 거의 모든 금융 자산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펀드, 주식구좌, 생명 보험중 Cash Value 가 있는 적립형 생명 보험 및 연금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융 자산 외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즉 전세나 월세를 준 모든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한국계좌 내용이 미국세청에 보고되므로, 정확한 해외 구좌 보고가 필요합니다.

• **해외금융 자산 신고**

지난해 동안 갖고 있던 해외구좌 의 총계가 \$10,000 를 넘기면 해외 금융 자산 신고 즉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를 해야합니다. 2015 회계연도의 해외 금융자산 소득은 2016 년 6 월 30 일까지 미국 재무부에 전자보고 해야합니다. (2015 년 회계연도 보고는 연장불가) 2016 회계연도부터는 신고 마감일이 4 월 15 일로 변경되며 개인 세금보고와 같이 6 개월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게 수정되었습니다.

- **연금 불입을 통한 절세**

절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2015 년 회계연도 절세를 위해 2016 년 4 월 15 일까지 불입 가능합니다.

2015 연금 불입 한도	
IRA(Traditional or Roth)	\$5,500 (50 세 이상 \$6,500)
401(k)/403(b)	\$18,000(50 세 이상 \$24,000)
Simple IRA	\$12,500(50 세 이상 \$15,500)

- **Gift Tax 면세**

2015 년과 같이 2016 년에도 일인당 \$14,000 까지의 Gift 에 대해 Gift tax 가 면세되고 Gift Tax Return 보고 의무도 면제됩니다. 만일 4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각 각 자녀에게 \$14,000 을 Gift 를 한다면 일년에 \$112,000 까지 Gift tax 없이 자녀에게 Gift 할 수 있고 이 Gift 금액은 Lifetime Gift Tax 면세 한도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Foreign-earned income 공제금액 인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에 대해서는 1 년에 최대\$101,300 까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tax home)가 반드시 해외에 있어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 **2016 회계연도부터 법인 세금보고 마감일 변경**

2016 회계연도 세금 보고부터 보고 마감기간이 아래와 변경됩니다.

비즈니스 세금보고 마감기간 변경				
회사형태	2015 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기존) (Calendar Year 기준)		2016 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변경) (Calendar Year 기준)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보고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보고
C corporation	03/15/2016	09/15/2016	04/15/2017 (변경)	09/15/2017 (동일)
S Corporation	03/15/2016	09/15/2016	03/15/2017 (동일)	09/15/2017 (동일)
Partnership, LLC, LP	04/15/2016	09/15/2016	03/15/2017 (변경)	09/15/2017 (동일)

- **최저임금 인상**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오는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10 달러**로 인상됩니다. LA 시와 LA COUNTY 에서도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 달러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LA CITY & LA COUNTY 최저임금 인상안	
2016년 7월	\$10.50
2017년 7월	\$12
2018년 7월	\$13.25
2019년 7월	\$14.25
2020년 7월	\$15

직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비즈니스 업체에게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2021년까지 15 달러로 인상하면 됩니다.

- **오바마 건강보험**

2015년부터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직원 1인당 연간 \$2,500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타임(주 30시간 이상 근무) 종업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0명 이상인 경우(정부제공기준)에는 2015년부터 건강 보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Form 1099**

사업자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여러가지 비용들 중에서 용역비나 임대료등의 특정한 지출사항에 대해선 IRS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인 Form 1099-MISC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099양식을 고의적으로 미발급시 벌금이 건당, 최소 \$250입니다. 2015년 동안 \$600 이상 용역비, 임대료 등을 지불한 경우 2016년 1월 말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2월 말까지 사업자는 발급한 모든 1099-MISC 내역을 종합해 IRS에 보고 해야 합니다. 법인은 제외하지만, 파트너십, LLC, 법률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1099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크레딧 카드사가 보내주는 Form 인 1099 K의 금액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099 K 보다 매상 보고가 적게 되면, IRS 감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Section 179 감가상각액 축소**

비즈니스 사업체는 IRC Sect 179 고정자산 신규구입에 대한 한 해에 감가 상각 비용 공제액이 \$25,000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Standard Mileage Rates(마일당 차량 비용공제)**

2015 년에 비즈니스 차량에 적용되는 마일당 차량 공제 비용은 마일당 57.5 센트이고 의료나 이사 목적으로 쓰인 경우는 23 센트 그리고 자선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는 14 센트가 적용됩니다.